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■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5호(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)를 삭제함.

■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(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질문 응답)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·군정 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소속행정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부기관인 읍·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·면장을 제외코자 함.

■ 검토결과 (의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, 하부행정기관인 읍·면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읍·면장을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	행	변	경
제2조 (범위) (생략)	제2조 (범위) (현행과 같음)		
1~4 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		
5. <u>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</u>	5. (삭제)		
<u>행정기관장</u>			